1. 의결주문

「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」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.

2. 보고이유

「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('15.10월)」및「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추진('14.7월)」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보 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

3. 주요내용

- 가. 연결재무제표 기반 지급여력제도(RBC) 시행(안 제7-1조, 제 7-2조의2)
 - 보험회사(모회사)의 RBC비율 산출시 "자회사"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RBC 제도 시행
- 나. 지급여력 산출시 내부모형 사용 근거 마련(안 제7-2조제7항)
 - 현행 표준모형과 함께 자체 통계 등에 근거한 위험계수를사용할 수 있는 내부모형 사용 근거 마련
- 다. RP거래 대손충당금 적립 면제 근거 마련(안 제7-4조제2항)
 - 건전성분류상 '정상'인 RP거래는 만기가 단기이고 담보가 확보된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을 면제

- 라.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(안 제7-5조제1항)
 - 과거 통계자료에만 근거한 양적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수준·체계에 대한 질적규제 체제(ORSA) 도입 추진
- 마. 위기상황분석 관련 체계 마련(안 제7-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)
 - 선제적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위기상황분석을 정기
 적으로 실시하고, 결과를 경영계획 등에 활용토록 유도
- 바. 보험회사 자본확충 수단 확대(안 제7-10조제2항 등)
 - 저금리, 건전성제도 강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후순위채 발행요건 완화,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 허용 등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 허용
- 사. 보험상품 비교공시 확대(안 제7-46조제4항 및 제5항, 제7-46조의2)
 - 협회 이외의 기관(인터넷 포털 등)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상품 비교·공시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아. 보험상품 설계기준 자율화(안 제7-48조제1항 등)
 - 복잡하게 얽힌 상품개발 관련 설계기준을 단순화하고,
 사실상 사문화된 상품규제를 전면 폐지

- 자. 신고 심사기준 명확화(안 제7-48조제1항, 제7-57조)
 - 생·손보 겸영불가 종목 등은 기존 신고기준에서 반드시 지 켜야하는 기초서류 작성원칙으로 변경
- 차. 신용공여 항목 규제체계 정비(안 별표1의2)
 - 대출약정 등이 신용리스크 측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용공여 범위 및 RBC 산출 기준을 개선
-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관계부서 협의 : 협의 완료

라. 기 타

ㅇ 규정변경예고(2015.12.18. ~ 2016.02.01.)

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-332호

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-1조제1호마목 중 "별표 22에서 정하는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자기자본의 100분의 15 이내"를 "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"로 하고,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. 가목 내지 아목 이외에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항목 및 금액

제7-1조제2호 나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및 제7-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액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의 합산액

사. 제1호 각목보다 자본성이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항목 중 가목 내지 바목 이외에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항목 및 금액

제7-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차감항목

미상각신계약비, 영업권, 이연법인세자산, 주식할인발행차금, 자기주식 등 보험회사의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보전에 사용될

수 없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자산 또는 자본 항목 및 금액제7-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출자회사 관련 항목

보험회사가 출자한 회사의 경우 출자액(장부가액)에서 해당 금융관련 법령의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금액으로 인정되는 금액 중 보험회사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차감방식 등 세부 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

제7-2조제7항 중 "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"를 "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(이하 "표준모형"이라고 한다) 또는 보험회사의 자체 통계에 기초한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(이하 "내부모형"이라고 한다)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, 내부모형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"로 하고, 제7-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-2조의2(지급여력비율의 재무제표 반영원칙)

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 및 영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7-4조제2항 중 ""정상"으로 분류된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"을 ""정상"으로 분류된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및 "정상"으로 분류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"으로

한다.

제7-5조제1항 중 "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"를 "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, 내부 자본적정성을 평가 · 관리할 수 있는 체제(이하 "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"라고 한다)를 갖추어야 하며,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신용위험 등"을 "신용위험 및 운영위험 등"으로 한다.

제7-6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"를 "위험관리책임자와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"로 한다.

- 5.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(이하 "위기상황분석"이라 한다) 결과(이 경우 해외의 영업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)
- 6.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보험상품 운영방향, 자본관리계획 등 제7-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제1항 각호의"를 "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.
- ② 보험회사는 제7-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후순위채무를 발행하는 경우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, 감독원장은 이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.

제7-11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영 제58조제3항에서 "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본조달수단"이란 만

- 기의 영구성, 배당지급의 임의성,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인 특성 등을 갖는 자본증권(이하 "신종자본증권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의 세부요건, 조기상환 요건, 신고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
- 제7-44조제7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-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른다.
- ④ 제3항에서 정하는 공시와 관련된 공시대상, 내용, 방법 및 시기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
- 제7-44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.
- 2.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제7-4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④ 협회는 제7-4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·공시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적정하게 비교·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제7-46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을

보험상품 비교·공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
제7-4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비교·공시 항목 중 보험료 및 환급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로 안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.
 - 1.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
 - 2. 단독실손의료보험
 - 3. 자동차보험
- 4. 그 밖에 협회가 별도 안내를 통한 비교·공시 필요성을 인정하는 보험 제7-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-46조의2(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・공시)

- ① 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 외의 자(이하 "보험상품 비교·공시기관"이라 한다)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·공시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·공시 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
- ② 보험상품 비교·공시기관이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·공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·공시할 것
 - 2. 제7-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

- 3. 전문용어 또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연계하여 제공할 것
- 4. 보험상품 비교·공시기관의 기본적인 검색기능과 연계하고 포괄적 인 상품검색 및 재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
- 5. 비교·공시 사항은 광고 등 상업적 용도로 제공하는 정보와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하되, 상업적 정보보다 우선하여 제공되도록 할 것
- 6.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·공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
- ③ 보험상품 비교·공시기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·공시 현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보험상품 비교·공시기관의 등록요건, 절차 및 방법과 보험상품 비교·공시 현황의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 제7-48조 제1항을 삭제한다.

제7-49조제2호가목3) 중 "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"를 "명확하여"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"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"을 "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"을 "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한다. 제7-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

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제7-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의 50% (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은 40%,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(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)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70%,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100%) 이상을 보험료 납입기간(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은 최소 7년을 말한다)동안 보험료에 균등하게 부가하지 아니한 저축성보험은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7-53조제2항 중 "별지 제23호의 "보험상품 판매 목록"을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위에"를 ""보험상품 판매 목록"을 제6-8조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"로 한다.

제7-55조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최적사업비 범위내에서"를 "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순보험료를 제외한 범위내에서"로 하며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 이전여부 및 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.

제7-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손해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손해보험 상품(연금저축손해보험상품 및 퇴직보험상품을 포함한다)별 사업방법서 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은 제7-55조 및 제7-56조를 준용한 다.
- ② 장기손해보험의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을 15년 이내로 설정하여야한다.
- ③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영 제15 조제1항 각 호의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 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.

제7-58조 중 "준용한다. 다만,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제7-5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"를 "준용하며, 보장성보험으로 개발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험기간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인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다."로 한다.

제7-60조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을 삭제하고,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. 보장하는 위험이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소멸시켜서는 아니되다.
- 9.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합계액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연금보험에서 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사망한 경우나 보험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. 제7-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제3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신설 및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- 1.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하도록 설계할 것
- 2.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(대표기관 포함)이 포함된 협의기구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, 제공절차 및 보험금 지급사유를 명확히 설정할 것. 이 경우 협회는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.
- ② 약관상 실제 발생하는 손해(이하 "실손해"라 한다)를 보장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 - 1. 제7-50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공제비율이 20%이상인 단독실손 의료보험(이하 "표준형 단독실손의료보험"이라 한다)을 판매하고 있을 것(다만, 단체보험은 제외)
 - 2. 실손의료보험계약(노후실손의료보험 제외)의 보험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(공제전)에서 다음 각 목의 금 액을 공제할 것(다만,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)
 - 3. 실손의료보험에서 위험구분단위별로 보험료의 변경이 매년 ±35%를 초과하지 않을 것(다만, 보험회사가 제7-16조 내지 제7-19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요구받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

경우는 제외)

- 4. 실손의료보험 위험률을 제7-50조제2항제8호에서 정하는 급여부분 과 비급여부분으로 구분할 것(여행보험은 제외)
- 5.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장내용을 준수하여 보험 약관을 작성할 것
 - 가.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는 다른 실손의료보험의 입원과 통원(외래 및 처방조제)의 년간 최대 보장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하일 것. 다만, 통원의 회(건)당 보상한도는 100만원을 최고한도로 한다.
 - 나. 지급보험금 계산시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(공제전)에서 입원은 30만원 통원은 3만원을 우선 공제한 후나머지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것(단, 입원의 경우 공제할 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한다)
 - 1)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급여부분 : 20%이상
 - 2)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 : 3 0%이상
- 6. 실손의료보험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방법서를 작성할 것
 - 가.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순보험요율의 적정성을 매년 검증할 것. 다만,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는 5년까지 적정성을 검증하

지 아니할 수 있다.

- 나. 보험기간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15년 이내로 할 것. 다만, 제7 -50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공제금액보다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보험(이하 "노후실손의료보험"이라 한다)은 3년 이내로 한다.
- 다. 75세 이상을 보장하는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해당 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을 것
- 라.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에 대하여 제7-50조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공제비율이 20%미만인 실손의료보험은 청구된 보험금이 해당 법규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
-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7-60조를 준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제7-60조제7호는 제외한다.

제7-64조제4호 중 "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"를 "보험금 및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"로 한다.

제7-65조제1호 중 "다음과 같이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할 것"을 "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할 것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·제4호·제5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할 것."을 "할 수 있다."로 하고, 단서조항을 삭제한다.

제7-6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3호 중 "제1호가목"을 "제1호"로 한다.

1. 해약환급금은 제7-65조제1호에 따른 보험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해약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다. 다만,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(陰)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(零)으로 처리한다.

W = V(N) - (12m-t)/(12m)a

단, W: 해약환급금, V(N):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, a: 표준 해약공제액, t: 납입경과 월수, m: 해약공제기간(년)

제7-66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순수보장성상품"을 "순수보장성상품 및 생존연금"으로 한다.

③ 해지시 해지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중도해지시 보험금 등을 차등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제7-68조 중 "별표 16과 같다."를 "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"로 한다.

제7-7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

제7-78조제4항을 삭제한다.

별표 1의2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의 B/S난내 기타 중 "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(제5-15조의2에 따라 감독원장에 제출한 약정금액)"을 삭제하고,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의 B/S난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주)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(제5-15조의2에 따라 감독원장에 제출한 약정금액), 원화대출약정⁵⁾, 외화대출약정⁵⁾

주5) 법113조에 따라 금지되는 채무보증에 해당 대출약정은 제외한다. 주6) (신용공여산출방법) 신용공여금액은 대차대조표 해당 항목에 계상된 금 급액으로 한다. 다만, 난외항목의 경우 대차대조표 난외에 계상된 금액에서 1)내지4)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아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4-13.의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별표 15 및 별표 2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7-1조 및 제7-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, 제7-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, 제7-2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7-46조, 제7-46조의2, 제7-48조, 제7-49조, 제7-50조, 제7-51조, 제7-53조, 제7-55조, 제7-57조, 제7-58조, 제7-60조, 제7-63조, 제7-64조, 제7-66조, 제7-68조, 제7-73조, 별표1의2, 별표 15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·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2016년 4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7-1조(지급여력금액) 영 제65 제7-1조(지급여력금액) -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 급여력금액은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하고 제3호와 제4호를 차감 하여 산출한다. 다만 제2호는 제1호에서 제3호를 차감한 금액 을 한도로 한다. 1. 기본자본 1. 기본자본 가. ~ 라. (생 략)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마. -----마. 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 능(후순위성, 영구성 등)을 가진 -----감독원장이 정하는 기 것으로서 별표 22에서 정하는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 준을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의 100분의 15 이내에 해당 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 하는 금액 의 100분의 25 이내-----바. ~ 아. (생 략) 바. ~ 아. (현행과 같음) 자. 가목 내지 아목 이외에 손실 자. (신 설) 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감독 원장이 인정하는 항목 및 금액 2. 보완자본 2. 보완자본 가. (생 략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나. 제7-9조제1항제5호의 규정 에 의한 후순위채무액, 신종자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 하는 금액 및 제7-9조제1항제5 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

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금액. 상환우선주 및 신종자본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누적적우선주 발 행금액의 합산액(제1호 '마'목의 금액을 포함한 자기자본의 100 분의 50범위 내 금액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고, 후순위채무액 및 상환우선주의 잔존만기가 5 년 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100분 의 20을 차감하여야 하며 만기 는 '상환일', '주주 및 채권자가 보유한 상환요구권의 최초 행사 가능일', '보험회사가 일정 기일 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배당률 의 상향조정 등 상환을 강제하 는 부담이 발생하는 기일'중 빠 른 날로 본다) 다. ~ 바. (생 략)

사.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 금융자산평가손익, 관계·종속기 업투자주식평가손익 및 재평가 잉여금

3. 차감항목(신 설)

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액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의 합산액

다. ~ 바. (현행과 같음)

사. 제1호 각목보다 자본성이

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항목 중

가목 내지 바목 이외에 손실보

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감독원

장이 인정하는 항목 및 금액

3. 차감항목

미상각신계약비, 영업권, 이연
법인세자산, 주식할인발행차금,

가. 미상각신계약
나. 영업권, 소프트웨어, 개발비, 상표권 등 시장성을 측정하기
곤란한 무형자산
다. 선급비용(장기토지사용권
등 거래나 유통이 가능한 시장
성 있는 선급비용은 제외)
라. 이연법인세자산(다만, 법 제
1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변액
보험 특별계정의 세무조정으로
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
다)
마.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액

바. 지분법적용 관계·종속기업

투자주식(집합투자기구와 보험

업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

한 자회사 발행주식 및 출자지

분은 제외한다)의 장부가액(연

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

사의 경우 제1호 아목의 지분법

을 적용한 평가금액을 말한다)

자기주식 등 보험회사의 예상하 지 못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보 전에 사용될 수 없다고 감독원 장이 인정하는 자산 또는 자본 항목 및 금액

<삭 제> 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u><</u>삭 제> <삭 제> 이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사.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 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아. 미처리결손금 등으로 자본 내 적립하지 못한 고정이하("고 정", "추정손실", "회수의문") 보 유자산에 대한 대손준비금 상당 액

자. 주식할인발행차금, 자기주 식(종속기업인 사모집합투자기 구에서 투자한 자기주식 포함), 부의 지분법자본변동

4. 자회사 자본부족(신 설)

가. 금융위가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이 적용되는 자회사의 경우 해당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최근 분기말 자본부족금 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4. 출자회사 관련 항목 보험회사가 출자한 회사의 경 우 출자액(장부가액)에서 해당 금융관련 법령의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금액으로 인정되는 금액 중 보험회사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차감한 금 액으로 차감방식 등 세부기준 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

<삭 제>

액(보험업 영위 해외현지법인등 의 경우 제7-1조 및 제7-2조 규 정에 따라 산출하며. 지분법 평 가대상 자회사의 경우 당기순손 익은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중 보험회사의 지분율 상당 금액

나. 금융위가 정한 자본적정성 〈삭 제〉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자회사의 경우 순자산(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부족 금 액 중 보험회사의 지분율 상당 금액

제7-2조(지급여력기준금액) 제7-2조(지급여력기준금액)

- ① ~ ⑥ (생 략)
- (7) 제2항 내지 제6항에 관한 세부 (7) -----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

-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- 사항은 감독원장이 제시하는 기 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(이하 "표준모형"이라고 한 다) 또는 보험회사의 자체 통계 에 기초한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(이하 "내부모형"이라고 한 다)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 며, 내부모형에 대한 세부 사항 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

제7-2조의2(지급여력비율의 재무

(신 설)

제7-4조(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) 제7-4조(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) ① (생략)

-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"정상"으로 분류된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 닌 자산 및 가지급금중 대출성 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~ ⑤ (생 략)

제7-5조(위험관리체제 등) 제7-5조(위험관리체제 등)

① 영 제6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① ------의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영업,

겡	豆	반영원칙)	١
∠\II	11-	- ST 8 37 77 7	,

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 및 영 제65 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 급여력기준금액은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 표를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 로 하며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① (현행과 같음)

"정상"으로 분류된 환매조건	부
채권매수 및 "정상"으로 분류	된
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	한
미수수익이 아닌 자산	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자산의 운용 또는 그 밖에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 험을 적시에 인식·측정·감시·통 제하는 등 <u>위험관리를 위한 체</u> 제를 갖추어야 한다.

- ② 보험회사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보험위험, 금리위험, 시장위험 및 <u>신용위험 등</u> 주요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~ ⑥ (생 략) 제7-6조(위험관리조직)
- ① 보험회사(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을 제외한다)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다만 효 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 (이하 "위험관리위원회"라 한 다)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수행 하게 할 수 있다.

위험을 적절히 관리하
고, 내부 자본적정성을 평가 ·
관리할 수 있는 체제(이하 "자
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
제"라고 한다)를 갖추어야 하며,
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
②
, 신용위험 및 운영위험 등
, <u>也可用 </u>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7-6조(위험관리조직)
①
•

1. ~ 4. (생략)

5. (신 설)

6. (신 설)

- ② 보험회사(자산규모 등을 감안 ② 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회사에 한한다)는 경영상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, 위험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할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.
- ③ (생 략) 제7-10조(후순위채무)
- ① (생 략)
- ② (신 설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
따른 위기상황분석(이하 "위기
상황분석"이라 한다) 결과(이
경우 해외의 영업현황을 고려하
<u>여야 한다.)</u>
6.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
보험상품 운영방향, 자본관리계
획 등
2)

------위험관 ------위험관 리책임자와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.

- ③ (현행과 같음) 제7-10조(후순위채무)
- ① (현재와 같음)
- ② 보험회사는 제7-9조제1항제5 호에 따라 후순위채무를 발행하 는 경우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 을 충족하여야 하며, 감독원장 은 이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

- ②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 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 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 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 다.
 - 1. ~ 3. (생략)
 - 4. 그 밖에 <u>제1항 각호의</u>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
- ③ ~ ⑥ (생 략)
 제7-11조(채권발행 등)
 ① ~ ② (생 략)
- ③ (신 설)

④ (신 설)

⑤ (신 설)

제시할 수 있다.
<u>③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4 <u>감독원장이 정한 신고</u>
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

- ④ ~ ⑦ (현행과 같음) 제7-11조(채권발행 등)
-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영제58조제3항에서 "금융위원 회가 인정하는 자본조달수단" 이란 만기의 영구성, 배당지급 의 임의성, 기한부후순위채무보 다 후순위인 특성 등을 갖는 자 본증권(이하 "신종자본증권"이 라 한다.)을 말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종자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감독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의 세부요건, 조기

제7-44조(경영공시)

- ① (생략)
- ② (신 설)

- ② (생략)
 - 1. (생략)
 - 2.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
 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
 기업집단(기업집단 소속회사
 가 아닌 경우 회사별)에 대하
 여 보험회사의 직전분기말 현
 재 지급여력금액의 5%에 상
 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
 채권이 발생한 경우(다만, 그
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
 제외)
 - 3.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금액의 1%에 상당하는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

상환 요건, 신고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 다.

제7-44조(경영공시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보험경영통 일공시기준에 따른다.
- ③ (현행과 같음)
 - 1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우(다만, 손실금액 또는 손실 예상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 우 제외)

- 4. 보험회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| <삭 제> 되어 당해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금액의 1%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(다 만.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)
- 5.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계약 | 건당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금액의 1%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 실(평가손실을 포함하며 위험 회피 대상거래에서 발생한 이 익을 제외한다)이 발생한 경 우(다만, 그 금액이 10억원 이 하인 경우 제외)
- 2. (신 설)
- 6. 제7-43조의 규정에 의한 긴 급조치가 취해진 경우 그 내 욧
- 7.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3 4. -----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

<삭 제>

- 2.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 이 발생한 경우

- 보험회사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보험경영통 일공시기준에 따른다.
- ④ ~ ⑥ (생 략)
- ⑦ 보험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
 <삭 제>

 라 공시하는 경우 공시전에 감
 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

 야 한다.
- 제7-46조(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) ① ~ ③ (생 략)
- ① 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의 한 협회외의 자가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도 제3항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준용하여 보험회사의 공시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자료의 출처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,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협회의 비교공시 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만을 비교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

- _____
- ④ 제3항에서 정하는 공시와 관련된 공시대상, 내용, 방법 및 시기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
- ⑤ ~ ⑦ (현행과 같음)<삭 제>

- 제7-46조(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협회는 제7-4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·공시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적정하게 비교·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124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제7-46조제2항에 따라통지받은 내용을 보험상품 비교·공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
다. ⑤ (신 설)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 에 대하여 비교·공시 항목 중 보 험료 및 환급금 등을 인터넷 홈페 이지를 통하여 별도로 안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 준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. 1.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 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 2. 단독실손의료보험 3. 자동차보험 4. 그 밖에 협회가 별도 안내를 통한 비교 · 공시 필요성을 인정 하는 보험 (신 설) 제7-46조의2(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・공시) ① 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따 라 협회 외의 자(이하 "보험상품 비교·공시기관"이라 한다)가 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·공시하 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·공시 기 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 ② 보험상품 비교·공시기관이 보

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·공시

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 만을 비교·공시할 것
- 2. 제7-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반드시 포함할 것
- 3. 전문용어 또는 법률용어에

 대한 설명을 연계하여 제공할

 것
- 4. 보험상품 비교·공시기관의
 기본적인 검색기능과 연계하고
 포괄적인 상품검색 및 재검색
 기능을 제공할 것
- 5. 비교·공시 사항은 광고 등 상 업적 용도로 제공하는 정보와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하되, 상 업적 정보보다 우선하여 제공되 도록 할 것
- 6.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하 게 비교·공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
- ③ 보험상품 비교·공시기관은 감 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상품 비교·공시 현황을 감독원장

제1관 기초서류의 신고기준 제7-48조(공통사항 신고기준) 제7-48조(공통사항 신고기준)

- ① 영 별표 6 제5호에 따라 보험 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 고하여야 한다.
 - 1. 장기손해보험(보장성보험을 <삭 제> 제외한다)의 보험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
 - 2.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손해보험(이하 "연금저축손해보험"이라 한다) 의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 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 하지 않는 경우
 - 3. 제3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개발하지 않는 경우. 다만, 보험 기간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인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은 제

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보험상품 비교·공시기관의 등 록요건, 절차 및 방법과 보험상품 비교·공시 현황의 보고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 다.

IJ		_	_								_	_	_	_	_	_	_	_	_	_	_	_	_	_	
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
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
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
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

<삭 제>

<u><</u>삭 제>

외한다.

4.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 버물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 상품으로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환급금 및 보험금 등이 변동하 는 경우. 다만, 제6-12조 제3항 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 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, 보험 료적립금에서 보험계약 체결 및 관리비용을 차감하는 보험상품 (이하 "사업비 후취구조 상품" 이라 한다)은 제외한다.

② (생략)

제7-49조(사업방법서 관련 신고 기준) 영 별표 6 제5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를 작성 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 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 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다음 각 목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 우. 다만, 개인보험과 동일한 보 험요율을 적용하는 단체보험은 제외한다. <삭 제>

(2)	(현행과	같음)
$\overline{}$	\	<u> </u>

제7-49조(사업방법서	관련	신고
기준)		
	•	
1. (현행과 같음)		
2		
· .		

가. 대상 단체

- 1) ~ 2) (생 략)
- 3)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 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 성원이 있는 단체

나. (생략)

다.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 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 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

- 1) (생략)
- 2) (생 략)
- 라. (생략)
- 마. (생략)
- 3. 사업비율을 보험상품별 또는 판매채널별이 아닌 다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하는 경우 4.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이 3년 초과인 경우. 다만, 보험기간이 계약체결시점에서 확정되지 아니하는 보험과 보증보험은 제외한다.

5. 실손의료보험이 다음 각 목의

가. 대상 단체
1) ~ 2) (현행과 같음)
3)
<u> 명확하여</u>
나. (현행과 같음)
다
-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
<u>것</u>

- 1) (현행과 같음)
- 2) (현행과 같음)

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u>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</u> 제7-50조(보험약관 관련 신고기 준)

- ① 영 별표 6 제3호다목에서 "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"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 1. 암에 대한 위험 보장: 90일
 2. 치매에 대한 위험 보장: 2년
 3. 일상생활장해에 대한 위험
 보장: 90일
- ② 영 별표 6 제5호에 따라 보험 회사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.

(신 설)

제7-50조(보험약관 관련 신고기 준)

<삭 제>

<삭 제>

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한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제7-51조(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)(신 설)

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 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 려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에 사 용할 금액의 50%(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은 40%. 금융 기관보험대리점등(영 제40조제 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는 제외)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 험상품은 70%, 영 제43조제4항 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100%) 이 상을 보험료 납입기간(납입기간 이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은 최 소 7년을 말한다)동안 보험료에 균등하게 부가하지 아니한 저축 성보험은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 여야 한다.

① 영 별표 6 제5호에 따라 보험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 야 한다.

1. ~ 6. (생 략)

<삭 제>

호나목 및 다목을 적용하지 아 니할 수 있다.

제7-53조(제출서류)

- ① (생략)
- ② 보험회사는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의 "보험상품 다음달 10일까지 금융위에 제출 하여야 한다.
- ③ (생략)

제2관 기초서류의 작성·변경원칙 제7-55조(생명보험의 사업방법 서)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 5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생명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 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 켜야 하다.

- 1. 보험기간은 종신까지의 범위 <삭 제> 내에서 연단위로 한다. 다만. 1 년이하의 기간에 대한 위험률을 산출하여 사용하거나 단기요율 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험률 산출단위에 부합되게 보험기간 을 설정할 수 있다.
- 2. (생략)
- 3.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📗

<삭	저	>

제7-53조(제출서류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----- "보험상품 파매 목록" 판매 목록"을 매분기 종료일의 | 을 제6-8조 업무보고서에 포함 하여 ----
 - ③ (현행과 같음)

제7-55조(생명보험의 사업방법

- 2. (현행과 같음)

최적사업비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.

4. 특약을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또는 고정적으로 부가하는 경우에는 부가방법, 부가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한다.

5. (생략)

6. (신 설)

제7-57조(손해보험의 사업방법
서) 손해보험회사가 영 별표 7
제5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
손해보험상품(연금저축손해보
험상품 및 퇴직보험상품을 포함
한다)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
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은 제755조 및 제7-56조를 준용한다.
다만, 일반손해보험(자동차보험

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순보험료를 제외한 범위내에서 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6.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 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기 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 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 이전여부 및 환급금에 관 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.

제7-57조(손해보험의 사업방법 서) ① 손해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 는 손해보험상품(연금저축손해 보험상품 및 퇴직보험상품을 포 함한다)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 려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은 제 7-55조 및 제7-56조를 준용한 다. <u>을 포함한다)의 경우에는 제7-5</u> 5조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 다.

② (신 설)

③ (신 설)

제7-58조(제3보험의 사업방법서) 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제3보험 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 는 경우 지켜야할 사항은 제7-5 5조 및 제7-56조를 준용한다. 다만,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제7-5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7-60조(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 계 등)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 5호에 따라 생명보험상품을 설 계하거나 보험약관을 작성하려

- ② 장기손해보험의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을 15년 이내로 설정하 여야 한다.
- ③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영 제15 조제1항 각 호의 보험종목을 취급 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기간을 5 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 로 설정하여야 한다.

제7-60조(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 계 등) -----

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1. 피보험자의 사망시 적립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 적립액을 제외한 사망보험금은 납입보험료(기본보험료의 최고 한도를 기준으로 하며, 보험기 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 년으로 할 수 있다)를 제6-12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이율로 할 인한 금액의 5%이상이어야 한 다. 다만, 연금저축 또는 연금보 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2. ~ 4. (생 략)

5. 연금보험에서의 생존연금은 연금지급개시 이후 최소 5년이 상 보증 지급하여야 한다.

6. 생존보험금이 설정되어 있을 | <삭 제> 경우 생존보험금 지급시점의 해 약환급금은 해당 생존보험금 이 상이어야 한다.

7. (생략)

8. (신 설)

9. (신 설)

<삭 제>

2. ~ 4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7. (현행과 같음)

8. 보장하는 위험이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소멸시켜서는 아니된다.

9.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

제7-63조(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)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 5호에 따라 제3보험상품을 설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1. (생략)

 2. 약관상 보장하는 금액은 정

 액 또는 실제 발생하는 손해(이

 하 "실손해"라 한다)를 기준으

 로 설계할 것

② (신 설)

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연금보험에서 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사망한 경우나보험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.

제7-63조(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) ①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제3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신설 및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(대표기관 포함)이 포함된 협의기구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, 제공절차 및 보험금 지급사유를 명확히 설정할 것. 이 경우 협회는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있으며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.
- ② 약관상 실제 발생하는 손해(이 하 "실손해"라 한다)를 보장하 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제7-50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공제비율이 20%이상인 단독실손의료보험(이하 "표준형단독실손의료보험"이라 한다)을 판매하고 있을 것(다만, 단체보험은 제외)
2. 실손의료보험계약(노후실손의료보험 제외)의 보험금을 약

2. 절단되료모임계구(소무절단 의료보험 제외)의 보험금을 약 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(공제전)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할 것(다만,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 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 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 비에서 제외)

3. 실손의료보험에서 위험구분 단위별로 보험료의 변경이 매년 ±35%를 초과하지 않을 것(다 만, 보험회사가 제7-16조 내지 제7-19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요구받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) 4. 실손의료보험 위험률을 제7-50조제2항제8호에서 정하는 급 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구분 할 것(여행보험은 제외)

5.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다

음 각 호의 보장내용을 준수하여 보험약관을 작성할 것
가.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는 다른 실손의료보험의 입원과 통원(외래 및 처방조제)의 년간 최대 보장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하일 것. 다만, 통원의 회(건)당보상한도는 100만원을 최고한도로 한다.

나. 지급보험금 계산시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(공제전)에서 입원은 30만원 통원은 3만원을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것(단, 입원의 경우 공제할 금액이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한다)

- 1)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급여부분 : 20%이상
- 2)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

 여법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 :

 30%이상
- 6. 실손의료보험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방법서를 작성할 것

가.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순보

는 경우는 5년까지 적정성을 검 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나. 보험기간 및 보장내용 변경 주기를 15년 이내로 할 것. 다 만, 제7-50조제2항제1호에서 정 하는 공제금액보다 높은 공제금 액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보 험(이하 "노후실손의료보험"이 라 한다)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. 75세 이상을 보장하는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해당 시점 에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을 것 라.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 하는 비급여부분에 대하여 제7 -50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공제비율이 20%미만인 실손의 료보험은 청구된 보험금이 해당 법규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

험요율의 적정성을 매년 검증할

것. 다만,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

3.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7-60조를 준용<u>할 것.</u> 다만,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제7-60조제1호·제5호·제7호는

3 -		 			
		 			하여
०}	한다.	 			
		 제7-	60조	제7	호는

제외하다. 제외하다. 제7-64조(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제7-64조(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) ---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) 보 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 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보험계약_내용을_변경하는_ 4. 보험금 및 보험료가 변경되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는 경우 -----제7-65조(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의 제7-65조(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의 계산)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계산) -----7 제4호나목에 따라 책임준비금 을 산출·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 1. 보험료적립금은 순보험료식 1. ----- 경과기간 등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회계연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 말 보험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에 따라 산출할 것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할 것 단, m: 납입경과월수, V: 보험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 적립금 다만,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계 약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말 보험 료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일별

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.V = V + (V - V)2. 연생보험의 보험료적립금은 <삭 제> 주피보험자와 주된 종피보험자 의 생존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립할 것. 다만,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여부에 따라 잔여보장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발생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립할 수 있다. 3. 보험료적립금은 연납보험료 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것. 다 -----할 수 있다. <단서<u>조항 삭제></u> 만, 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주기별로 산출한 다. 4.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다음 <삭 제> 과 같이 산출할 것 5.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계약 <삭 제> 의 경우 보험료 납입예정월의 계약일자에 보험료가 납입된 것 으로 간주하여 책임준비금 등을 계산할 것 제7-66조(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제7-66조(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) 계산) ①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4 ① -----

호나목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산

출·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1. 해약환급금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을 가.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해약공제액을 공제한다. 다만,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(陰)의 값인경우에는 이를 영(零)으로 처리

한다.

W = V(N) - (12m-t)/(12m)a 단, W: 해약환급금, V (N):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, a: 표준해약공제액, t: 납입경 과 월수, m: 해약공제기간(년) 2. 제1호가목에 따른 해약공제 기간은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으로 하되,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 이상일 때에는 7년으로 한다.

- 3. <u>제1호가목</u>에 따른 해약공제액은 별표 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으로 할 것
-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되 | <삭 제>

<u>1. 해약환급금은 제7-65</u> 조제1호
에 따른 보험료적립금에서 다음
과 같이 해약공제액을 공제할
수 있다. 다만, 순보험료식 보험
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공
제한 금액이 음(陰)의 값인 경
우에는 이를 영(零)으로 처리한
다.
2. 제1호
<i>□.</i> <u>△ 1- -</u>
3. <u>제1호</u>

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에 미경과보험료적 립금 등을 가산한 금액을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- ③ 금리연동형보험에서 계약일로 부터 5년 이내에 해지될 경우에 는 별도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.
- ④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<u>순수보장</u> 성상품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 니할 수 있다.

제7-68조(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법) 보험가입금액, 보험종목 또는 보험기간 등을 변경할 때의 계산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.

제7-73조(보험요율 산출의 원칙) ① ~ ③ (생 략)

④ 물가변동, 의료기술발달, 위험 변화요인 등을 반영하여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할 경우에는 위험 률에 대하여 최대 30%까지 할증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 우 등 위험률차 이익의 정산기능 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20%까지 추가 할증할 수 있다.

1. (생 략)

③ 해지시 해지공제액을 공제하지
않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중도
해지시 보험금 등을 차등화하여
적용할 수 있다.
④ <u>순</u> 수보장성상품
및 생존연금
제7-68조(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
법)
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7-73조(보험요율 산출의 원칙)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4

1. (현행과 같음)

- 2. 영 별표6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
- 3. ~ 4. (생략)

제7-78조(일반손해보험의 예정위 험률의 산출기준)

- ① ~ ③ (생 략)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률의 <<삭 제> 변경은 연1회(보증보험은 매 3년 1회)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제3 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위험 률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.
- ⑤ (생략)

- 2.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 매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
 - 3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사 ~ 계 \

⑤ (현행과 같음)